1. 방송사업자 분담금 산정 체계

1-1. 최종 징수율 산정

— < 기본 징수율 > -

광고매출액 구간별 최소 기본징수율값 + (1.0, 2.0, 3.0, 4.0, 5.0) 사업자별 광고매출액 -광고매출액 구간 시작값 광고매출액 구간 상한값 - 시작값

× 조정계수

※ 조정계수

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1

지역·중소지상파: 0.931

※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50%을 초과하는 경우, 150%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 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함

X

< 징수율 추가 감경 >

∘ KBS·EBS(공공성): 1/3 감경

∘ 지역·중소지상파 :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규모에 따라 감경

∘ 종편·보도채널 : 11.67% 감경

◦ 중앙지상파 및 종편·보도채널 : 당기순손실 발생 시 손실에 비례하여 추가 감경



최종 징수율 결정

1-2. 분담금 징수금액 결정

___ < 분담금 산출 >

방송광고 매출액 × 최종 징수율

- < 면제 및 경감 > -

구분	관련규정	내용			
면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1호	광고매출액 50억원 이하이며, 당기순손실 발생 사업자			
제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사업자			
경 감	시행령 제13조 제1항제3호	재무상태표 상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분담금 경감			



사업자별 최종 징수금액 결정

2. 방송사업자별 분담금 산정 내역 등의 공개

(단위 : %, 원)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1	㈜문화방송	중앙지상파	4.1935%		4.1935%	_	-	11,495,655,620
2	㈜에스비에스	중앙지상파	4.2817%	_	4.2817%	_	-	15,138,087,600
3	한국방송공사	중앙지상파	4.189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1호에 따른 1/3 감경	2.7930%	_	-	7,556,411,650
4	한국교육방송공사	중앙지상파	2.401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1호에 따른 1/3 감경 및 제5조 제4호에 따른 0.4961% 감경	1.1049%	_	-	287,945,340
5	㈜G1	지역민방	1.8599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2호 가목에 따른 4/12 감경	1.2400%	_	_	123,858,450
6	대구문화방송㈜	지역MBC	1.8678%		1.2452%	_	_	127,606,320
7	(재)불교방송	라디오	0.6117%		0.4078%	_	-	13,398,430
8	(재)원음방송	라디오	0.2819%		0.1879%	_	-	2,844,780
9	(재)극동방송	라디오	0.2440%		0.1626%	_	-	2,131,010
10	오비에스경인티브이㈜	지역민방	2.0614%		1.3743%	232,115,403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23,081,580
11	㈜와이티엔라디오	라디오	0.2794%		0.1863%	2,035,348	-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	759,500
12	(재)기독교방송	라디오	2.1066%		1.4044%	15,336,157		272,666,010
13	대전문화방송㈜	지역MBC	1.8074%		1.0543%	_	-	102,342,240
14	전주문화방송㈜	지역MBC	1.3554%		0.7906%	_	-	57,550,890
15	춘천문화방송㈜	지역MBC	0.9750%		0.5687%	_	-	29,778,560
16	목포문화방송㈜	지역MBC	0.9523%		0.5555%	_	-	28,408,030
17	㈜엠비씨강원영동	지역MBC	1.7900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2호 나목에 따른 5/12 감경	1.0442%	_	-	100,377,510
18	㈜케이엔엔	지역민방	2.1193%		1.2362%	_	_	260,271,270
19	㈜티비씨방송	지역민방	1.9967%		1.1647%	_	-	183,886,490
20	㈜광주방송	지역민방	1.9439%		1.1339%	_	_	153,283,960
21	㈜대전방송	지역민방	1.8932%		1.1044%	_	-	125,231,160
22	㈜전주방송	지역민방	1.3402%		0.7818%	_	_	56,269,260
23	㈜청주방송	지역민방	1.3959%		0.8143%	_	-	61,040,730
24	㈜제주방송	지역민방	1.2470%		0.7274%	_	-	48,719,370
25	㈜경인방송	라디오	0.1932%		0.1127%	_	-	1,169,600

No	방송사업자명	구분	기본징수율	징수율 감경 구분	최종징수율	분담금 감면액	분담금 감면 사유	분담금 결정액
26	(재)부산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188%		0.0109%	_	-	11,020
27	(재)광주영어방송재단	라디오	0.0205%		0.0120%	8,211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5,000
28	㈜와이티엔디엠비	DMB	0.1626%		0.0948%	526,872	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	300,920
29	부산문화방송㈜	지역MBC	1.9195%		0.9598%	_	-	119,696,760
30	광주문화방송㈜	지역MBC	1.7369%		0.8685%	_	-	81,012,460
31	울산문화방송㈜	지역MBC	1.2768%		0.6384%	_	-	43,772,690
32	㈜울산방송	지역민방	1.2801%	방통위 고시 2022-14호	0.6401%	_	-	44,005,050
33	여수문화방송㈜	지역MBC	0.9196%	제5조 제2호 다목에 따른	0.4598%	22,710,632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_
34	안동문화방송㈜	지역MBC	0.8797%	6/12 감경	0.4399%	20,782,995	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	_
35	(주)엠비씨충북	지역MBC	1.8886%		0.9443%	4,188,966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101,046,280
	(대김미씨중국	VI = INIDC	1.0000 /0		0.9443 /0		제13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	
36	㈜엠비씨경남	지역MBC	1.9222%		0.6407%	_	_	80,635,480
37	제주문화방송㈜	지역MBC	1.1766%		0.3922%	_	_	24,784,050
38	포항문화방송㈜	지역MBC	1.2338%	 방통위 고시 2022-14호	0.4113%	_	-	27,253,450
39	원주문화방송㈜	지역MBC	0.8802%	제5조 제2호 라목에 따른	0.2934%	13,868,105		_
40	(재)평화방송	라디오	0.5670%	6/12 감경	0.1890%	5,756,154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_
41	서울특별시 교통방송	라디오	0.0861%		0.0287%	132,710	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	_
42	한국디엠비㈜	DMB	0.0366%		0.0122%	51,376		_
43	㈜조선방송	종합편성	4.0415%		3.5699%	_	-	4,904,484,900
44	㈜와이티엔	보도전문	3.1905%	방통위 고시 2022-14호	2.8182%	_	_	1,677,567,420
45	㈜채널에이	종합편성	3.3792%	제5조 제3호에 따른	2.9849%	614,166,538		1,444,280,460
46	㈜매일방송	종합편성	3.4021%	11.67% 감경	3.0051%	93,825,211		2,012,857,690
47	㈜연합뉴스티브이	보도전문	2.8871%		2.5502%	308,988,086	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	850,944,500
48	㈜제이티비씨	종합편성	4.0944%	방통위 고시 2022-14호 제5조 제3호에 따른 11.67% 감경 및 제5조 제4호에 따른 1/2 추가 감경	1.5694%	2,852,534,175	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김면	50,410,390

[※] 기본징수율 및 최종징수율은 소수점 네자리로 표기

3. 근거법령

□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(분담금의 면제·경감, 분할 납부 및 가산금)

-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면제·경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3.10.30., 2015.6.22.>
- 1. 다음 각 목의 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 가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
 - 나.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
- 2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(자본잉여금을 포함 한다. 이하 제3호에서 같다) 총액 이상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 면제
- 3.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 :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
- 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1억원을 말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을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하고, 제2회의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. <신설 2020. 8. 4.>
- ④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1. 3. 29., 2020. 8. 4.> [제목개정 2020. 8. 4.]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-14호) 제5조(최종징수율의 산정)

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,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.

1. 「방송법」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 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.

- 2.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「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.
 - 가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
 - 나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
 - 다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
 - 라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
- 3.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 행태,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.67%를 감경한다.
- 4.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.
 - 가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
 - 나.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(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× 5)를 추가 감경

"예시"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: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(100분의1 × 5)를 추가 감경

□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(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-14호) 제8조(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)

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, 징수율 감경사유,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